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합산 근거 마련 >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합산 근거 마련	2
2. 개정안 부칙	15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균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1.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합산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u>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u> 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 <u>교직원·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u>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u>퇴직급여액</u> 이	② ----- ----- ----- ----- ----- <u>퇴직급여액</u>

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연금법」 제38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 -----. -----.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은 직역연금 중 하나임. 직역연금은 특정직군에게 적용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에 따르면, 직역연금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에 따른 사학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¹⁾
- 현행 「사학연금법」은 재직기간 산정시, 같은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던 사람이, 퇴직 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퇴직 전에 적용받던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하는 경우,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²⁾

1) 「연금연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사학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적용받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도, 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별정우체국직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동 연금으로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와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가 지급되고, 퇴직급여 기준으로 비용은 직원 본인 및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연금 기준으로 비용은 교직원 본인, 학교경영기관, 국가가 부담하는 사학연금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사학연금 비교]

구분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사학연금																																			
근거법	• 「별정우체국법」	• 「사학연금법」																																			
운용주체	•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제4조(설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적용대상	•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직원, 그 유족	•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교원·직원, 그 유족																																			
지급급여	• 제24조(급여) - 장기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비업무상 장해연금, 퇴직수당 - 단기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보조금	• 제33조(급여) -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 요양급여, 재할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비용부담 (퇴직급여 /연금 기준)	•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table><tr><th>구분</th><th>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th><th>부담주체</th></tr><tr><td>개인</td><td>9.00%</td><td>• 직원 본인</td></tr><tr><td>피지정인</td><td>9.00%</td><td>• 국가</td></tr><tr><td>합계</td><td>18.0%</td><td></td></tr></table>	구분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부담주체	개인	9.00%	• 직원 본인	피지정인	9.00%	• 국가	합계	18.0%		<table><tr><th>구분</th><th colspan="2">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th><th>부담주체</th></tr><tr><td></td><th>교원</th><th>사무직원</th><td></td></tr><tr><td>개인</td><td>9.00%</td><td>9.00%</td><td>• 교직원 본인</td></tr><tr><td>법인</td><td rowspan="2">5.294% 3.706%</td><td>9.00%</td><td>• 학교경영기관</td></tr><tr><td>국가</td><td>-</td><td>• 국가</td></tr><tr><td>합계</td><td>18.0%</td><td>18.0%</td><td></td></tr></table>	구분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부담주체		교원	사무직원		개인	9.00%	9.00%	• 교직원 본인	법인	5.294% 3.706%	9.00%	• 학교경영기관	국가	-	• 국가	합계	18.0%	18.0%	
	구분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부담주체																																		
	개인	9.00%	• 직원 본인																																		
피지정인	9.00%	• 국가																																			
합계	18.0%																																				
구분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부담주체																																		
	교원	사무직원																																			
개인	9.00%	9.00%	• 교직원 본인																																		
법인	5.294% 3.706%	9.00%	• 학교경영기관																																		
국가		-	• 국가																																		
합계	18.0%	18.0%																																			
	•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등																																				

자료: 관련 법령,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이러한 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다른 직역연금과 유사하게 퇴직 전 기관(이하 “종전 기관”이라 함)에서의 재직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직역연금 적용 대상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연금연계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대상 기간으로 4개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³⁾

3) 「연금연계법」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재직기간 합산시 이행되는 신청자의 반납과 종전 기관의 이체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먼저, 반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사학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 시, 신청자가 종전 기관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학연금공단에 반납하고, 신청자가 최종 퇴직할 때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함.
 - 그러나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합산(안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도 반납금 납부에 대한 내용(안 제3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아, 해당 합산을 신청한 교직원은 반납금 납부 없이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 별정우체국연금과 사학연금에서 모두 퇴직급여를 받게 됨.
- 다음으로 이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사학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 시, 신청자가 종전 기관에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사학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최종 재직기간(예: 종전 기관 재직 10년 + 최종 기관 재직 5년 = 총 재직 15년)에 따른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신청자가 종전 기관에서 해당 기관 퇴

4.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부분(종전 기관 재직 10년)은 종전 기관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 그러나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의 이체가 규정된 「사학연금법」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별정우체국법」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할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퇴직연금 이체 없이 사학연금에서 퇴직연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정안에 규정된 재직기간 합산 관련 반납과 이체에는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운영하는 재직기간 합산 절차와 재직기간 합산을 적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합산(안 제32조제1항)과 반납금 납부에 대한 내용(안 제32조제2항)을 모두 적용하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사학연금으로 이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은 연금액의 이체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과 「군인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은 현행법의 연금액 이체 조항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해당 연금으로 이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⁴⁾

[재직기간 합산 관련 반납 및 이체]

구분	반납(일시금 수급자)	이체(연금 수급자)
근거	•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납부주체	• 교직원 본인	종전 연금기관
납부금액	• 반납금(일시금 수급액+이자)	종전 연금기관 재직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액
납부방법	• 교직원 본인이, 종전 기관에서 수급한 일시금에 「사학연금법」상 이자를 더하여, 사학연금공단에 반납 종전 기관 ⇒ 교직원 ⇒ 최종 합산기관	• 교직원이 종전에 재직한 연금법 적용기관에서, 해당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 종전 기관 ⇒ 최종 합산기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둘째, 재직기간 합산시 적용되는 반납과 이체 등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직기간 합산 신청자가 종전 기관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사학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금액을 2025년 11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직기간을 합산한 교직원 2만 1,982명은 4,139억원을 반납하였고, 재직기간 합산 교직원에 대해 7조 8,141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음.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 및 연금 지급액 현황]

구분	재직기간 합산 교직원	합산 반납금	연금 지급액
공무원연금	12,277명	3,664억원	4조 1,108억원
군인연금	9,705명	476억원	3조 7,034억원
전체	2만 1,982명	4,139억원	7조 8,141억원

주: 1. 2025. 11. 기준

2. 연금지급액은 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시점부터 2025.11. 현재까지 수급한 연금액의 합계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참고자료 1】 재직기간 합산 중 이체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참조

한편, 재직기간 합산 신청자가 종전 기관에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신청자의 종전 기관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하는 규모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체되는 규모가 사학연금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체되는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재직기간 합산 이체 규모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3년	528	17,510	199	5,768	93	2,756	-	-
2024년	549	19,043	214	6,460	95	2,990	-	-
2025년	566	19,970	223	7,010	97	3,110	-	-

주: 사학연금→군인연금 해당자가 없어 이체되는 금액이 없음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반납의 경우, 재직기간 합산 신청 교직원이 종전 기관 재직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반납하여, 일시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자금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체의 경우, 다른 직역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체하는 금액이 사학연금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체하는 금액보다 많고, 해당 금액은 재직기간 합산 교직원이 사학연금 적용 기관에서 최종 퇴직할 경우, 종전 기관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종전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체가 필요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의 증가가 사학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재직기간 합산 신청자가 사학연금 적용기관에서 최종 퇴직할 경우, 사학연금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합산 교직원의 최종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기준액(기준소득월액) 증가 등이 반영되고,

사학연금 적용기관에서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재직) 보다 짧게 재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지급 대상이나,⁵⁾ 종전 기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학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⁶⁾

개정안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대상의 범위가 별정우체국직원으로 확대될 경우, 재직기간 합산 대상 증가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의 범위에 별정우체국직원을 추가하면서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사학연금에서 총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함.

□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재정건전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학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5) 「공무원연금법」 (*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6) 예: 종전 기관 재직 10년 + 사학연금 적용기관 재직 5년 = 총 재직 15년 ⇒ 사학연금에서 연금 지급

[사학연금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 고갈 시점 추계]

구분			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사학연금	제6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2025.12.	2028년	2047년
대한민국정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2026년	2047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2025.2.	2028년	2042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참고

[직역연금 현황 비교]

구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수	32.4만명	129.3만명	18.1만명	0.32만명
연금수급자 수	10.8만명	60.3만명	8.1만명	0.26만명
자산규모	27.7조원	16.3조원	0.9조원	0.1조원
재정수지 적자시점	2028년	1993년	1973년	2015년
기금고갈 시점	2047년	2001년	1973년	2027년

주: 1. 가입자 수, 연금수급자 수, 자산규모: 2024년말 기준

2. 재정수지 적자시점 및 기금고갈 시점: (사학연금) 제6차 재정재계산 결과(2025.12) 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직연금 장기 재정전망」(2020.7.) 기준,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재정안정화를 위한 별정연금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효율화 방안 연구」(2023.8)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셋째,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사학연금법」은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과 관련하여, 연금수급자가 직역연금 적용 대상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준용하고 있으므로,⁷⁾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에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도 의결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⁸⁾

7)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8) 【참고자료 2】 재직기간 합산 중 지급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참조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별정우체국연금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경우, 반납금을 통한 일시적 재정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재직기간(합산 포함)에 대해 산정한 연금의 지급의무가 사학연금으로 전가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합산제도의 확대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재직기간을 합산한 연금수급자의 합산반납금은 4,139억원에 불과하나, 사학연금이 지급한 총 연금액은 7.8조원에 달함
- 또한, 개정안에는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예정 포함)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수반되어야 하는 연금액의 이체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사학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2015년 법령 개정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어, 단기재직자 등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자를 위한 합산제도 본래의 취지가 약화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중검토**

- 재직기간 합산자의 연금 급여는 최종합산을 승인한 연금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므로, 직역연금 간의 재정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합산 시 발생하는 연금액 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퇴직 후 받는 연금급여는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므로, 기금이 조기에 고갈되어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바, 연금개혁의 방향, 추진 내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별정우체국 직원에 한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규정한 안 제32조제1항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일과 재직 기간의 합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함.
- 그러나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운영하는 재직기간 합산 절차와 재직기간 합산을 적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재직 기간의 합산(안 제32조제1항)뿐만 아니라 반납금 납부에 대한 내용(안 제32조제2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재직기간 합산 중 이체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현행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제14761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14764호)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14762호)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 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제33조의4(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24조의6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24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는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현행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제14761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14764호)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14762호)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채할 금액을 산정한다.			

참고 2

재직기간 합산 중 지급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14764호)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14762호)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 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u>군인연금법</u>」,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또는 「<u>별정우체국법</u>」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u>별정우체국의 직원</u>으로 임용된 경우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u>별정우체국법</u>」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또는 <u>별정우체국직원</u>으로 임용된 경우